◉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87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「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」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3월 05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#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**1. 개정이유**

영업자는 도급신고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 구성, 안전점검,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등에 대해 작성ㆍ제출하고 있으나,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사항은 없어 안전교육 이수 여부 관리에 한계

**2. 주요내용**

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실시계획 추가(안 제2조 제6호)

**3. 의견제출 방법**

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)

| 개정(안) | 수정(안) | 수정 사유 |
|---|---|---|
| | | |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,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

- 전화 044-201-6836, 팩스 044-201-6830
- 전자우편 : je1895@korea.kr
-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(www.epople.go.kr)
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(www.mcee.go.kr, 법령/정책 → 법령정보 → 입법ㆍ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